



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직급	모집권역		소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보호직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7급	전국		13	4	-	8	1
	권역별	수도권	1	-	1	-	-
		강원권	1	1	-	-	-
		충청권	1	1	-	-	-
		전라권	4	2	2	-	-
		제주권	1	1	-	-	-
총계			21	9	3	8	1

* 전국 : 27개 지부, 1개 법무보호교육원 등을 포함하여 전국 기관 배치

** 권역별 채용 : 지원한 권역 내 지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후, 전국 순환 전보 실시

단, 동일 권역 내 전보 가능(예: 수도권의 경우 경기북부지부↔경기동부지부 전보 실시)

***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최초 근무예정지는 경북지부이며 향후 법무보호사업 운영상 전보 가능

【 권역별 소속 기관 】

권역구분	소속기관
수도권	서울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경기동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교육원
강원권	강원지부, 강원동부지부
충청권	대전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경상권	대구지부, 경북지부, 경북서부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남서부지부
전라권	광주지부, 광주남부지부, 전남지부, 전남동부지부, 전북지부
제주권	제주지부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보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은 내부규정 확인 및 별도 문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임용시기	2026년 12월 예정 * 공단 내부 사정, 합격순위, 근무예정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임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수습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3 응시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구분	응시자격
공통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 1】임용 결격사유
심리상담직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②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③ 임상심리사 2급 이상 ④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취업지원직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 자격증에 한함

구분	자격증 (관련법률)
국가전문자격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국가기술자격증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 취업지원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기업발굴 및 관리, 직업 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심리상담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대학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상담·재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심리검사 및 해석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심리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직업훈련교사(전기)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전문학교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교사(전기) 관련 분야(교육생·훈련생을 직접 교육한 경력 및 현장에서 상근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를 수행한 경력

** 경력이란?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경력 등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함
-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예) 담당업무 : '교내 재학생 취업 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상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업무', '건축물 전기공사', '자격(전기·전기공사기사 등) 이론 및 실기 강의 진행' 등)
-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 요청 실시·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4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보호직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 · 기획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심리상담직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 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취업지원직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기술교육원(전기) 운영 및 관리 ◦ 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 · 실기) 및 대상자 관리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별첨 2】 직무기술서

5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6. 9. 15.(화) ~ '26. 9. 30.(수)	16일
접수기간		'26. 9. 21.(월) - '26. 9. 30.(수) 15:00	10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		'26. 10. 15.(목)	
공개경쟁 (보호직)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6. 10. 24.(토)	* 장소 : 추후 안내
경력경쟁 (심리상담, 취업지원, 직업훈련교사)	인성검사	'26. 10. 22.(목) ~ '26. 10. 24.(토)	온라인 인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6. 11. 4.(수)	
면접시험		'26. 11. 10.(화) ~ '26. 11. 12.(목)	* 장소 :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6. 11. 26.(목)	
이의신청		'26. 11. 26.(목) ~ '26. 12. 11.(금)	16일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6. 12. 2.(수) ~ '26. 12. 4.(금)	
임용(예정)일		'2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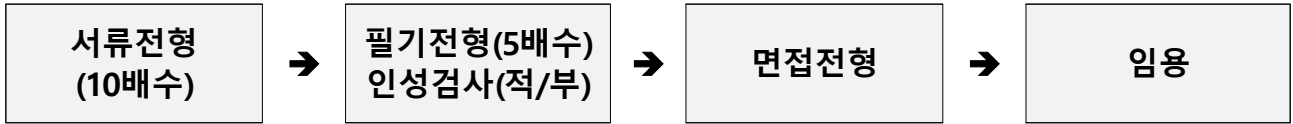
※ 채용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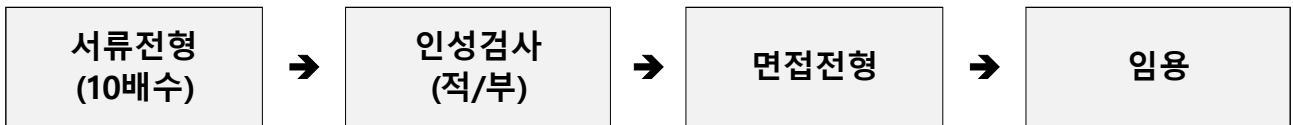
6 채용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원서접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URL : https://koreha.careerlink.kr)
유의사항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타 직렬과 교차지원 또는 타 권역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 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 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서류전형

- ※ 심사결과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평가기준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50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경력(경험)기술서	50점	◦ 담당 예정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자격사항	15점	◦ 직무 관련 자격증 중 소지한 자격증의 최고 등급
	경력사항	15점	◦ 직무 관련 최초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기간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35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35점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 평가척도

○ 정성평가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0 ~ 41점	40 ~ 31점	30 ~ 21점	20 ~ 11점	10 ~ 1점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5 ~ 31점	30 ~ 26점	25 ~ 21점	20 ~ 16점	15 ~ 11점

※ 서류전형 정성평가 성실성 위반, 블라인드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함

【별첨 3】 서류전형 정성평가 불성실 판단기준

○ 정량평가

심리상담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자격 사항 (15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급 - 전문상담사 1급 (※ 한국상담학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		
	15점			10점		
경력 사항 (15점)	9년 이상	7년 이상 9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취업지원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자격 사항 (15점)	- 직업상담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15점			10점		
경력 사항 (15점)	11년 이상	9년 이상 11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정량평가 평가척도						
자격 사항 (15점)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15점			10점		
경력 사항 (15점)	9년 이상	7년 이상 9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내용으로만 평가

※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① 자격사항

-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자격증에 한함

구분	자격증 (관련법률)
국가전문자격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국가기술자격증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사항에 대한 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평가 실시**

<자격사항 평가 제외 항목 예시>

- * 자격사항에 대한 급수(등급)를 미기재하여 평가점수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 * 자격사항 명칭 일부 누락으로 인하여 자격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사항으로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② 경력사항

-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 * 예) A 지원자가 직업상담사 2급(22년 3월 취득), 사회복지사 1급(21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
A 지원자가 사회복지사 2급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 후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 근무 경력 인정 기준

직종	경력 인정 기준
심리상담직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심리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취업지원직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직업훈련교사직(전기)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교육훈련 및 현장실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인성검사					
검사대상	모든 채용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당일('26. 10. 24.) 일괄 실시 ◦ (경력경쟁채용)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26. 10. 22. ~ '26. 10. 24.)				
불합격 기준	◦ 인성검사에 미응시한 경우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필기시험					
시험대상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서류전형 합격자				
내용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과목 및 배점	◦ 과목별 세부 사항				
	영역	세부과목	문항수		배점
	직업공통능력	① 의사소통능력	10	50문항	70점
		② 문제해결능력	10		
		③ 수리능력	10		
		④ 대인관계능력	10		
⑤ 자기관리능력		10			
직무수행능력	① 사회복지학개론	20	50문항	30점	
	② 경영학개론	15			
	③ 행정학개론	15			
합격자 결정	◦ 시험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불합격 기준	◦ 각 영역별 가산특전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가산특전을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면접시험					
시험대상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평가방법	◦ 구술면접(경험·상황·인성면접 등)·시뮬레이션면접(발표면접) ◦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보호직에 한함)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④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7 가산특전 (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구분	적용대상	내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 보호직(전국) ◦ 취업지원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10% 또는 5% ◦ ③장애인과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② 직무 관련 자격증	◦ 보호직	◦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						
③ 장애인	◦ 모든 채용분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5% ◦ ①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table><tr><th>1급</th><th>2급</th><th>3급</th></tr><tr><td>2%</td><td>1.5%</td><td>1%</td></tr></table>	1급	2급	3급	2%	1.5%	1%
1급		2급	3급					
2%	1.5%	1%						
⑤ 우리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수료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table><tr><th>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th><th>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th></tr><tr><td>2%</td><td>1%</td></tr></table>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2%	1%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2%	1%							

【별첨 4】가산특전 세부내용

※ 가산특전 적용방법

- 중복 불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가산특전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 ①취업지원대상자, ③장애인의 경우 둘 중 유리한 1개만 가산특전 적용(중복 불가)
- ①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만 가점합격자로 선발(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순위 및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모집 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8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면접시험 응시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회 부여			
제출방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발급기한을 경과 한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발급기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함 - 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
	3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4	① 자격증	제한 없음	- 자격사항에 대하여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② 자격취득확인서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① 경력(재직)증명서	제한 없음	- ★①,②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응시원서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 제출로 ① 서류 대체 가능
		②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위여부 확인	◦ 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확인 결과 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 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첨 5】경력사항 지원서류 검증 결과 인정 처리 기준

9 예비합격자 운영

모집권역		소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보호직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전국		14	5	-	5	4
권역별	수도권	4	-	4	-	-
	강원권	4	4	-	-	-
	충청권	4	4	-	-	-
	전라권	10	5	5	-	-
	제주권	4	4	-	-	-
총계		40	22	9	5	4

운영방법	-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 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개별통보)
임용사유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유효기간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10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피해자 특징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피해자 불특정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제절차 피해자분류	서류전형 단계	필기시험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11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서류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인지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별첨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 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별첨 1】 임용 결격사유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별첨 2】 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기술서 【보호직】

채용 분야	보호직	NCS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1. 사회복지	02. 총무·인사
			소분류	02. 사회복지서비스	03. 일반사무
			세분류	02. 일상생활기능지원, 03. 사회복지면담	02. 사무행정
공단 주요 사업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지귀를 촉진하고, 개인과 공공의 복지·안전을 증진하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임용				
연계 능력 단위	▪ [일상생활기능지원] 사회활동지원 ▪ [사회복지면담] 사회복지면담 초기면접 ▪ [사회복지면담] 사회복지면담 기록관리 ▪ [사회복지면담] 개인상담 ▪ [사무행정] 문서작성 ▪ [사무행정] 문서관리 ▪ [사무행정] 자료관리 ▪ [사무행정] 회의 운영 ▪ [사무행정] 사무행정 업무관리 ▪ [사무행정]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 [사무행정] 그룹웨어 활용				
일반 요건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30.)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직무 수행 내용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선도 ▪ 법무보호대상자 상담·지원, 출소예정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환경조사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분석·기획,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 그룹웨어 및 법무보호전산시스템 사용·운용				

	▪ 법무보호사업 관련 문서 기안과 회계·인사 등 행정업무 처리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및 회의·위원회 지원 ▪ 법무보호사업 확대·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운영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필요 지식	▪ (사회활동지원) 금융 관련 지식·정보, 사회복지 전달체계, 인권침해 예방과 대처, 지역자원의 유형과 활용정보 ▪ (사회복지면담 초기면접) 개인정보 보호법, 욕구사정 원리, 면담 유형, 대상자 유형별 특성 ▪ (사회복지면담 기록관리) 기록의 결재·보존 방식,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기관 기록관리 규정 ▪ (개인상담) 내담자중심모델, 사회기술훈련모델, 해결중심모델 ▪ (문서작성·관리·자료 관리) 문서 양식·작성규칙, 문서대장·분류·보안, 자료 수집·정리·보존 기준 ▪ (회의 운영·업무 관리) 회의 운영방법·보고서 작성지침, 직제·업무분장, 업무 전달 프로세스 ▪ (사무자동화·그룹웨어 활용) 업무용 프로그램, 전자문서·그룹웨어 및 정보시스템 활용지식 ▪ (행정·회계업무) 기초회계 지식, 업무처리 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 ▪ (디지털·윤리·안전)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디지털책임, 산업안전보건 기초지식
필요 기술	▪ (사회활동지원) 대상자의 사회활동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탐색·연계하는 능력 ▪ (사회복지면담 초기면접) 비언어적 표현 해석, 정보수집, 효과적 질문과 경청 능력 ▪ (사회복지면담 기록관리) 사실에 근거한 기록 작성, 기록물 분류·보존, 핵심내용 메모 능력 ▪ (개인상담) 긍정적 자기진술과 재진술, 문제대처, 방어기제 대응 능력 ▪ (문서·자료 관리) 명확한 정보표현, 문서편집·검색, 자료 수집·분류·시각화 능력 ▪ (회의 운영·업무 관리) 회의계획·회의록·보고서 작성, 일정·업무흐름 관리 능력 ▪ (사무자동화·그룹웨어 활용) 업무용 프로그램, 전자문서·그룹웨어 및 사무기기 활용 능력 ▪ (행정·회계업무) 회계시스템과 사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빙·자료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 ▪ (디지털 활용) 허용된 정보시스템과 보조도구를 활용하고 자료·산출물의 정확성·보안성을 검증하는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사회활동지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대상자의 욕구·자립을 존중하며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는 태도 ▪ (사회복지면담) 공감적·공정한 태도, 문화적 차이 존중, 기록의 객관성 및 보존절차 준수 ▪ (개인상담) 개방적 사고, 비밀보장, 수용적·협력적 태도 ▪ (문서·자료 관리) 보고일정·문서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태도 ▪ (회의·업무 관리) 회의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원활히 협업하는 태도 ▪ (행정·회계업무) 정확한 업무처리와 회계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 (디지털·윤리·안전) 개인정보·정보보안·저작권·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디지털 산출물을 책임 있게 검증하는 태도
직무 관련 자격	▪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직무 관련 자격

직업 공통 능력	영역	직무 중점 하위능력	직무 적용
	의사소통능력	문서소통능력, 구두소통능력	상담·사전면담, 기록·보고서 작성, 관계기관·자원봉사자와의 정확한 정보교환
	수리능력	연산능력, 통계활용능력, 도표활용능력	지원실적·예산·회계자료를 정확히 처리하고 통계·도표를 해석·작성
	문제해결능력	문제분석능력, 대안발굴능력, 의사결정능력	복합 욕구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자원·지원대안을 비교하여 적정 조치 결정
	자기관리능력	적응학습능력, 시간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법·제도·시스템 변화 학습, 다수 사례·행정일정의 우선순위 관리
	대인관계능력	협업능력, 갈등관리능력, 리더십	대상자·가족·유관기관·동료와 협업하고 민감한 갈등상황을 조정
	디지털능력	디지털활용능력, 인공지능(AI)활용능력, 디지털책임의식	공단 전산시스템·사무용 프로그램·데이터 및 허용된 보조도구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 정확성·보안성을 검증
	직업윤리	근로윤리, 직장공동체의식, 산업안전보건지의식	공정성·비밀보장·청렴을 준수하고 현장·출장·행사 운영의 안전을 확보
참고 사이트 및 유의 사항	- 참고: www.koreha.or.kr, www.ncs.go.kr - 직무수행내용은 2026년 채용공고의 담당예정직무와 공단의 법무보호사업 운영범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 자격은 응시 필수요건이 아니며, 우대·가산 여부는 채용공고에 따릅니다. - 필기시험 평가영역·문항 수·배점과 배치조건은 2026년 채용공고 본문에 따릅니다.		

NCS 기반 직무기술서 【심리상담직】

채용 분야	심리 상담직	NCS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3. 심리상담
			세분류	01. 심리상담
공단 주요 사업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과 공공의 복지·안전을 증진하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임용			
연계 능력 단위	▪ 개인심리치료상담 ▪ 집단상담 ▪ 관계자 상담 ▪ 위기상담 ▪ 심리검사 활용 ▪ 심리상담 정보관리			
일반 요건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30.)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직무 수행 내용	▪ 법무보호대상자 개인·집단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시·채점·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가족지원 ▪ 중독·정신질환 등 위험사례 관리, 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 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정신건강 전문기관 의뢰·연계 ▪ 그룹웨어 및 법무보호전산시스템 사용·운용, 상담기록·문서·행정업무 처리 ▪ 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위원회 관리 및 회의 지원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담·행정업무			
필요 지식	▪ (개인심리치료상담) 개인정보 보호, 상담자 윤리, 주요 상담이론과 치료적 관계의 원리 ▪ (집단상담) 집단상담 이론,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운영·평가 원리와 연구조사 방법 ▪ (관계자 상담) 대인과정, 사례개념화, 가족·관계자 상담의 원리와 절차, 관계역동 ▪ (위기상담) 위기상담 이론, 위기유형 분류기준, 자살·자해 위험평가 및 기관 위기대응 절차 ▪ (심리검사 활용) 심리검사의 종류·실시·채점·해석, 신뢰도·타당도와 검사윤리 ▪ (심리상담 정보관리)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비밀보장 원칙, 상담기록 관리기준 ▪ (디지털·윤리·안전) 정보보안·저작권·비대면 도구의 윤리, 디지털책임, 상담자·내담자 안전 원칙			

필요 기술	▪ (개인심리치료상담) 기관 규정을 설명하고 언어·행동단서를 반영하며 메시지를 요약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능력 ▪ (집단상담) 요구조사, 자료 조사·분석·평가, 프로그램 매뉴얼·운영계획서 작성 능력 ▪ (관계자 상담) 사례개념화, 상호작용 촉진, 가족·관계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상담기법 활용 능력 ▪ (위기상담) 내담자와 상담자의 안전 확보, 위기수준 평가, 위기유형 분류 및 적절한 연계·보고 능력 ▪ (심리검사 활용) 경청, 행동관찰, 검사 선정·실시·채점·해석, 질문 및 호소문제 분석 능력 ▪ (심리상담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기준 적용, 상담기록 작성·보존·폐기, 윤리기준 설명·준수 능력 ▪ (디지털 활용) 승인된 정보시스템과 보조도구를 활용하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전문가 판단으로 검증하는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개인심리치료상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내담자를 이해하며 친절·온화하게 대하고 상담의 긍정적 기대를 높이려는 태도 ▪ (집단상담) 자료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하는 창의적 태도, 지역사회와 인간욕구에 대한 민감성, 참가자 선정의 공정성 ▪ (관계자 상담) 경청하는 태도,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려는 태도, 가족·관계자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 (위기상담) 대상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담윤리와 기관 절차를 준수하는 태도 ▪ (심리검사 활용) 가치중립적·조력자적 태도, 내담자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 ▪ (심리상담 정보관리) 개인정보와 상담기록을 소중히 다루고 비밀보장·상담자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 (디지털·윤리·안전) 디지털 결과를 전문가 판단으로 재검증하고 민감정보 보호·정보보안·저작권·안전기준을 준수하는 태도		
필수 자격 요건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직업 공통 능력	영역	직무 중점 하위능력	직무 적용
	의사소통능력	문서소통능력, 구두소통능력	면담·상담에서 언어·비언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검사·상담 결과를 적절히 설명·기록
	수리능력	통계활용능력, 도표활용능력	심리검사 점수·규준 통계와 상담성과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시각화
	문제해결능력	문제분석능력, 대안발굴능력, 의사결정능력	사례개념화와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상담·위기개입 대안을 비교하고 조치 결정
	자기관리능력	적응학습능력, 시간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상담이론·검사도구·윤리 변화의 지속 학습, 사례·기록·프로그램 일정 관리
	대인관계능력	협업능력, 갈등관리능력, 리더십	내담자·가족·관계기관·동료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
	디지털능력	디지털활용능력, 인공지능(AI)활용능력, 디지털책임의식	상담기록·심리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허용된 디지털·인공지능 보조도구의 결과를 전문가 판단으로 검증
	직업윤리	근로윤리, 직장공동체의식, 산업안전보건 의식	가치중립·비밀보장·전문윤리를 지키고 위기상담에서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참고 사이트 및 유의 사항	▪ 참고: www.koreha.or.kr, www.ncs.go.kr ▪ 필수 자격요건은 채용공고에 명시된 4개 자격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상담기록과 심리검사자료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및 상담자 윤리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 직무범위와 경력 인정기준은 2026년 채용공고 및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NCS 기반 직무기술서 【취업지원직】

채용 분야	직업 상담 서비스	NCS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공단 주요 사업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과 공공의 복지·안전을 증진하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임용			
연계 능력 단위	▪ [직업상담] 취업상담 ▪ [직업상담] 직업훈련상담 ▪ [직업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직업상담]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 [직업상담] 직업상담행정 ▪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운영 ▪ [취업알선] 구인개척 ▪ [취업알선] 구인구직매칭 ▪ [취업알선] 취업알선정보관리 ▪ [취업알선] 취업알선 사례관리			
일반 요건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30.)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직무 수행 내용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접수, 개인·집단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설계, 직업훈련상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관리 ▪ 구인기업 발굴,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관리 ▪ 구인·구직 매칭,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취업연계 ▪ 취업지원 실적·고용동향 등 통계관리·분석·보고 ▪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고용24·그룹웨어·법무보호전산시스템 사용·운용 ▪ 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위원회 관리, 문서·회의·기타 행정업무			
필요 지식	▪ (취업상담·직업훈련상담) 지역 노동시장과 고용동향, 직업가치·직업적응·직업상담 이론, 직업훈련 제도·정보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 이론·유형,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원리 ▪ (협업체계 구축·직업상담행정) 유관기관·구인기업 협업체계, 업무협약, 개인정보 보호, 상담기록·행정·통계관리 기준			

	▪ (직업심리검사 운영) 검사 종류·실시·채점·해석, 신뢰도·타당도와 검사윤리 ▪ (구인개척·구인구직매칭) 직무·구인조건 분석, 구직자 역량·취업장애요인, 고용·노동관계 법령과 알선절차 ▪ (취업알선정보관리·사례관리) 고용서비스 정보망, 취업지원 실적관리, 취업 후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원리 ▪ (디지털·윤리·안전) 개인정보·정보보안·저작권, AI 활용윤리, 동행면접·사업장 연계 시 안전기준
필요 기술	▪ (취업상담·직업훈련상담) 구직요구·취업장애요인 분석, 상담목표 설정, 훈련·지원제도 연계 능력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대상 특성 분석, 프로그램 진행·촉진·평가 능력 ▪ (협업체계 구축·직업상담행정) 기업·유관기관 협의, 업무협약 관리, 상담·행정자료와 통계의 체계적 처리 능력 ▪ (직업심리검사 운영) 검사도구 선정·실시·채점·해석, 검사태도 관찰과 결과 설명 능력 ▪ (구인개척·구인구직매칭) 구인처 발굴, 직무·근로조건 분석, 구직자 적합성 판단, 동행면접·알선 능력 ▪ (취업알선정보관리·사례관리) 구인구직 정보 등록·갱신, 취업성과 분석, 사후관리·재개입 능력 ▪ (디지털 활용) 고용·구인구직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분석하고 정보 및 산출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취업상담·직업훈련상담) 구직자를 편견 없이 존중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와 소통·수용하고 신뢰관계·공정성을 유지하며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태도 ▪ (협업체계 구축·직업상담행정) 기업·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개인정보 보호·기록의 객관성·업무책임을 지키는 태도 ▪ (직업심리검사 운영) 검사대상자를 배려하고 결과를 신중·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 (구인개척·구인구직매칭) 구인·구직 조건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무리한 알선을 지양하는 태도 ▪ (취업알선정보관리·사례관리) 실적을 정확히 관리하고 취업 후 적응과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태도 ▪ (디지털·윤리·안전) 개인정보·정보보안·저작권 기준을 준수하고 디지털 산출물을 검증하며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태도
필수 자격· 경력 요건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 취득 후 공고문에서 정한 취업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직업 공통 능력	영역	직무 중점 하위능력	직무 적용
	의사소통능력	문서소통능력, 구두소통능력	구직상담·기업상담·동행면접·집단상담에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
	수리능력	연산능력, 통계활용능력, 도표활용능력	고용동향·취업성과·구인구직 실적·검사점수를 분석하고 통계·도표로 보고
	문제해결능력	문제분석능력, 대안발굴능력, 의사결정능력	취업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훈련·구인처·지원제도 대안을 비교해 취업지원방안 결정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적응학습능력, 시간관리능력	노동시장·제도·정보망 변화 학습, 다수 대상자와 기업의 상담·알선 일정 관리
	대인관계능력	협업능력, 리더십, 갈등관리능력	대상자·구인기업·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채용·근로조건 관련 갈등을 조정
	디지털능력	디지털활용능력, 인공지능(AI)활용능력, 디지털책임의식	정부 고용서비스 정보망·공단 전산시스템·데이터 및 허용된 보조도구를 활용하고 개인정보·보안·정확성 기준을 준수
	직업윤리	근로윤리, 직장공동체의식, 산업안전보건의식	공정한 알선·비밀보장·청렴을 지키고 동행면접·사업장 연계 시 안전을 고려
참고 사이트 및 유의 사항	- 참고: www.koreha.or.kr, www.ncs.go.kr - 필수 자격 취득 후 취업지원업무 경력 1년 이상 요건을 공고문·지원서·증빙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취업상담·취업알선·구인기업 발굴·사후관리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고용서비스 윤리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 자격·경력의 인정범위와 증빙기준은 2026년 채용공고 및 공단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NCS 기반 직무기술서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채용 분야	직업 훈련 교사직 (전기)	NCS 분류 체계	대분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19. 전기전자
			중분류	03. 직업교육	01. 전기
			소분류	01. 직업교육	07. 전기공사
			세분류	02. 기업교육	01. 내선공사 02. 외선공사
공단 주요 사업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과 공공의 복지·안전을 증진하는 형사정책 사업 -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무보호사업 :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임용				
연계 능력 단위	▪ [기업교육] 교육체계 수립 ▪ [기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 [기업교육] 교수활동 수행 ▪ [기업교육] 교육성과 평가 ▪ [기업교육] 교육과정 설계 ▪ [기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 [기업교육] 교육운영기획 ▪ [기업교육] 교육자원관리 ▪ [내선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내선공사] 내선공사계획 ▪ [내선공사] 내선공사검사 ▪ [내선공사] 배관공사 ▪ [내선공사] 배선공사 ▪ [내선공사] 옥내조명공사 ▪ [내선공사] 전열공사 ▪ [외선공사] 가공배전선로공사 ▪ [외선공사] 배전기기 설치공사				
일반 요건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30.)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직무 수행 내용	▪ 기술교육원 전기 분야 운영·관리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 직업훈련 관련 통계관리·분석·기획 ▪ 법무보호대상자 전기 이론·실기교육, 훈련생 지도·평가·안전관리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위원회 관리				

	▪ 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 및 연계취업 지원 ▪ 교정기관·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훈련대상자 모집 ▪ 교육시설·실습장·교재·장비 등 교육자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및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필요 지식	▪ (교육체계 수립) 교육체계 수립 프로세스와 구조, 교육 필요점·역량격차 도출방법 ▪ (교육운영기획·교육과정 설계·개발) 교육목표·내용·방법·평가 설계, 운영계획서·교재·디지털 교수자료 개발방법 ▪ (교육과정 운영·교수활동 수행) 교수학습 방법, 훈련생 지도·상담·진도관리, 이론·실기수업 운영기준 ▪ (교육성과 평가·교육자원관리) 성취도·교육성과 평가, 실습장·교재·장비·예산·안전관리 기준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전기안전·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설계도서·표준시방서·품질기준 ▪ (내선공사) 배관·배선·접속·절연·접지·조명·전열·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검사 기준 ▪ (외선공사) 가공배전선로·배전기기·변압기·개폐기·보호장치의 구조, 시공·점검·안전 기준 ▪ (디지털·윤리·안전) 저작권·개인정보·정보보안·디지털책임, 위험성평가, 감전·추락·화재 예방과 비상조치
필요 기술	▪ (교육체계 수립) 교육 필요점과 필요역량·보유역량 간 차이를 분석하는 능력 ▪ (교육운영기획·교육과정 설계·개발) 교육운영계획·교재·학습보조자료·디지털 콘텐츠를 설계·개발하는 능력 ▪ (교육과정 운영·교수활동 수행) 이론·실기수업 진행, 시범·피드백, 훈련생 진도·참여·안전관리 능력 ▪ (교육성과 평가·교육자원관리) 성취도·만족도·취업성과 분석, 시설·장비·교재 점검·관리 능력 ▪ (내선공사) 설계도서·현장·공정·자재·기술기준 검토, 배관·배선·접속·절연·접지·시운전·개보수 능력 ▪ (외선공사) 전선규격 선정, 이도측정, 슬리브 시공, 변압기·개폐기·보호장치 설치·결선·점검 능력 ▪ (디지털 활용) 교육자료·측정데이터·설계도구를 활용하고 산출물의 기술적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교육체계 수립) 객관적 분석과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체계적 접근 태도 ▪ (교육운영기획·교육과정 설계·개발) 학습자 요구와 현장성을 반영하고 콘텐츠 적합성·창의성을 추구하는 태도 ▪ (교육과정 운영·교수활동 수행) 훈련생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지도하며 수업·실습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태도 ▪ (교육성과 평가·교육자원관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지키고 시설·장비·예산을 정확히 관리하는 태도 ▪ (전기공사 공통) 관련 법령·KEC·설계도서·표준시공방법·품질기준을 준수하는 태도 ▪ (작업·실습 안전) 공구 정리정돈, 팀 작업 협조, 감전·추락·화재 예방 및 보호구·안전수칙 준수 태도 ▪ (디지털·윤리·안전) 저작권·개인정보·정보보안·디지털책임 기준을 준수하고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
필수 자격 요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직업 공통 능력	영역	직무 중점 하위능력	직무 적용
	의사소통능력	문서소통능력, 구두소통능력	교육계획·교재·작업지시를 명확히 작성·설명하고 훈련생의 이해도를 확인
	수리능력	연산능력, 통계활용능력, 도표활용능력	전기량·부하·단락전류 등 계산, 도면·계측값·훈련성과 통계의 해석·활용
	문제해결능력	문제분석능력, 대안발굴능력, 의사결정능력	설비·시공·교육운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실행가능성을 비교해 조치 결정
	자기관리능력	적응학습능력, 시간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법규·KEC·기술·교수법 변화 학습, 수업·실습·시설·훈련생 일정 관리
	대인관계능력	협업능력, 리더십, 갈등관리능력	훈련생·동료·위원·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실습현장의 역할·갈등을 조정
	디지털능력	디지털활용능력, 인공지능(AI)활용능력, 디지털책임의식	디지털 교수자료·측정·설계도구와 허용된 보조도구를 활용하고 기술적 정확성·안전성·정보보안을 검증
	직업윤리	근로윤리, 직장공동체의식, 산업안전보건지식	교육자 윤리·공정성·품질을 지키고 전기실습의 산업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확보
참고 사이트 및 유의 사항	- 참고: www.koreha.or.kr, www.ncs.go.kr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 교육과정 운영·교수활동·성과평가·교육자원관리와 전기공사 실습은 관련 법령·기술기준·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합니다. - 실제 교육범위와 시설·장비 운영기준은 기술교육원 운영계획 및 공단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별첨 3】 서류전형 정성평가 불성실 판정기준

□ 서류전형 정성평가 불성실 판정 기준

○ 성실성 위반 세부내용

구분	위반사항
불성실	◦ 작성항목 미작성 또는 최소분량(100자 미달) ◦ 질문과 무관한 답변 또는 의미없는 문자 입력
중복	◦ 서로 다른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답변의 반복 ※ 표절률 검사 결과 표절률 50% 이상
표절률	◦ 타 지원자 또는 타 기업 지원서의 표절 ※ 표절률 검사 결과 표절률 50% 이상 ※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경우 표절률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음
기관명	◦ 기관명 오기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공단, 'KOREHA' 외에는 모두 오기재로 간주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세부내용

구분	위반사항
이름	◦ '본인의 이름' 명시
가족(친인척) 재직정보	◦ '가족(친인척)의 이름', '가족(친인척)의 재직정보' 등 가족(친인척)의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명시
기타	◦ 그 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명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조건

【별첨 4】가산특전 세부내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자

10%	대상별	5%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5·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직무 관련 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 가산점 부여

-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별표7]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를 준용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아래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산비율	5%		3%
자격증명	◦ 변호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직업상담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사회복지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가산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소지한 자

구분	3급	2급	1급
가산비율	1%	1.5%	2%

⑤ 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가산점 부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수료한 자

구분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가산비율	1%	2%

【별첨 5】 경력사항 지원서류 검증 결과 인정 처리 기준

① 경력 증빙서류 제출내용

연번	내용	발급기한	비고
1	- 경력(재직)증명서 -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발급 3개월 이내) 제출로 대체	제한없음	
2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② 경력 인정 기준 : ①,②의 조건이 모두 일치

- ① 응시원서에 작성된 내용과 경력증명서 상 내용(근무기관, 근무기간 등)이 일치
- ②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간이 일치
- ※ 4대보험 신고절차 등으로 인한 ①, ② 조건의 근무기간 오차 인정 범위 : 3일 이내

③ 경력 미인정 기준

- 경력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의 발급기한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응시자가 작성한 경력 중 1개 이상 경력이 미인정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
- 응시원서 내 경력은 모두 서류전형 정량평가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경력 미인정 사항 재검토로 적격여부 판단 시 채용의 공정성 절하

【별첨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